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70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박성민 · 엄태영 · 박형수
유상범 · 윤영석 · 정동만
안철수 · 구자근 · 이인선
박덕흠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 · 균형 · 인지 · 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
임(안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피부양자”를 “피부양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2에 따른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1의2. 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이 경우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건강검진)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u>피부양자</u> <단서 <u>신 설</u>></p> <p><<u>신 설</u>></p> <p>2. 3.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후단 <u>신설</u>></p> <p><<u>신 설</u>></p>	<p>제52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p> <p>1. ----- ----- ----- -----<u>피부양자</u>. 다만, 제1 <u>호의2</u>에 따른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은 제외한다.</p> <p><u>1의2. 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 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u>이 경우 노년기건 강검진에는 낙상 위험, 인지기 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노년기 건강위험요인에 대 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공단은 65세 이상인 가입자</p>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피부양자가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
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
-----그 밖에 필요한 사
항, 제4항에 따른 연계 체계 구
축에 필요한 사항-----
-----.